2023년도 제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3년 3월 9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신 성 환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김 웅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최 창 호 조사국장 김 인 구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박 종 우 금융시장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박 양 수 경제연구원장 민 준 규 법규제도실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12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3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3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구성체계는 지난 12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최근 정책수행 상황과 여건 변화에 대해 충실히 작성하기로 하였음. 특히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난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2월에는 유지 결정을 내린 만큼 집필대상 기간 중의 정책결정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였음. 또한 향후 물가경로와 주요국 통화정책방향 등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국내외통화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인 점을고려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의 흐름과 장단기금리 역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리스크 요인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로 하였음. 한편, 그간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을 이어온 만큼 그 파급영향을 점검하여 충실히 설명하고,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서 참고 박스 등을 통해 평가하기로 하였음. 그 외에도 보고서의 개요를 보다 간결하게 기술하는 한편 독자의 가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본문의 배치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3월 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소폭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 장단기금리차 역전 등 국 내 금융시장 주요 현안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참고 박스의 수록 순서를 변경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미 달러화가 연말연초 약세를 나타내다 최근 유로화 및 엔화 대비 강세로 전환된 바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술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스왑레이트 동향에 대한 설명이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독자들의 이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쉬운 표현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국내 채권시장 움직임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 인 국채선물 순매수의 배경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 었음.

이 외에도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관련한 분석에서 VAR 모형의 계수 뿐만 아니라 분산분해 내용까지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3월)」(안)(생략)

## <의안 제13호 -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원화 정기적금의 최단만기가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추어 2%의 동일한 지준율이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 금의 만기를 조정하기 위해「한국은행법」제28조 제2호 및 제56조 제1항에 의거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에 대해 1월 25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들은 2%의 지급준비율이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규정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외화 정기적금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낮은 수요를 감안할 때금번 만기 조정이 금융기관의 외화수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외화지준 및 외환보유액 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개정(안)(생략)